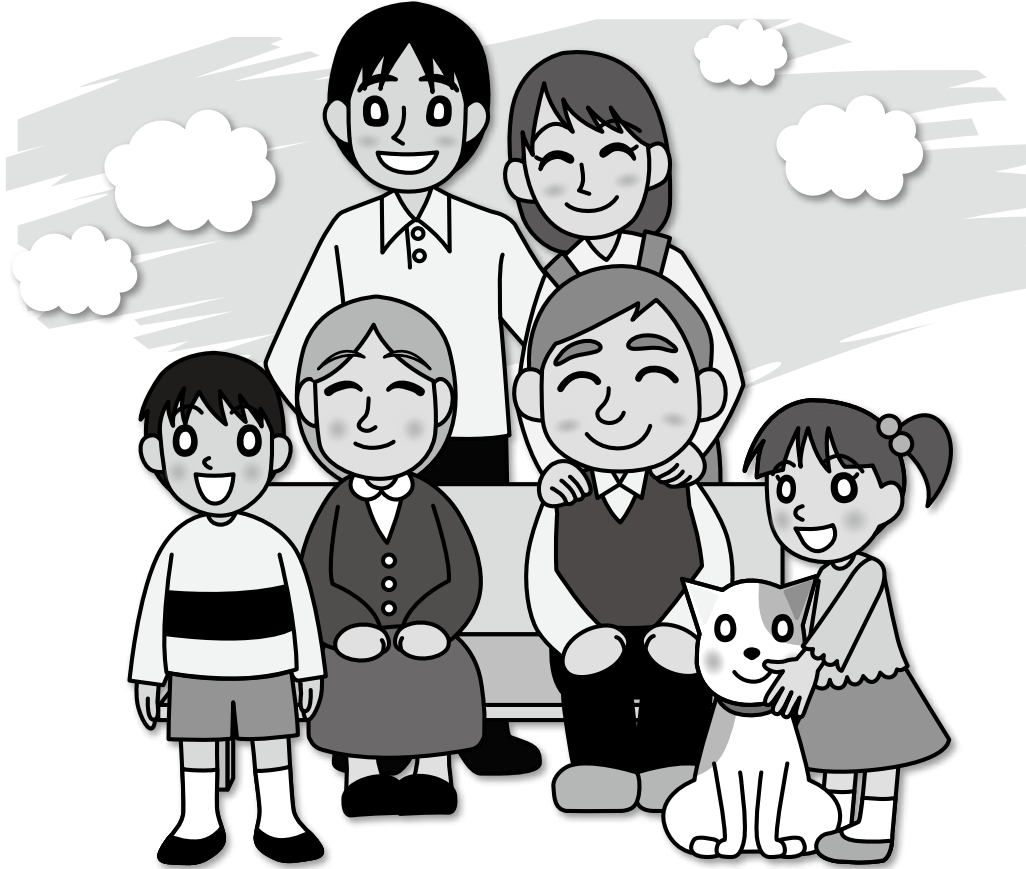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개호보험입니다



개호보험이란 ?

본격적으로 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개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여, 가족만의 힘으로 개호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개호보험제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개호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사회 전체가 서로 도움으로써, 개호를 하는 쪽 · 개호를 받는 쪽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친분이 넓어지는 개호보험

가와사키

개호보험의 대상자

가와사키시 내에 주소가 있는 40 세 이상의 시민이 가와사키시의 개호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가와사키시의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65 세 이상인 분 (제 1 호 피보험자)

가와사키시에서 65 세 도달일의 전월 하순에 「개호보험피보험자증」을 보내 드립니다 (65 세 생일의 전날이 65 세 도달일이 됩니다).

40 세 이상 65 세 미만의 의료보험 가입자 (제 2 호 피보험자)

제 2 호 피보험자의 「개호보험피보험자증」에 대해서는 특정 질병 (뇌혈관 질환 등의 16 개 질병)이 원인으로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과 교부를 희망하는 분에게만 발행됩니다.

인정받은 개호도가 기재됩니다.

인정받은 날과 인정 유효 기간이 기재됩니다.

보험료 체납 등으로 급부가 제한되는 경우에 기재됩니다.

(一)	(二)	(三)												
<p>介護保険(被)保険者証</p> <p>番号</p> <p>住所</p> <p>フリガナ</p> <p>氏名</p> <p>生年月日</p> <p>性別 男・女</p> <p>交付年月日</p> <p>保険者番号並びに保険者の名称及び印</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1 4 1 3</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川 崎 市</p>	<p>要介護状態区分等</p> <p>認定年月日 (事業対象者の場合は、基本チェックリスト実施日)</p> <p>認定の有効期間</p> <p>区分支給限度基準額</p> <p>居宅サービス等</p> <p>1月当たり サービスの種類 単位 種類支給限度基準額</p> <p>認定審査会の意見及びサービスの種類の指定</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給付制限</th> <th>内 容</th> <th>期 間</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開始年月日 終了年月日 開始年月日 終了年月日 開始年月日 終了年月日</td> </tr> <tr> <td></td> <td>居宅介護支援事業者若しくは介護予防支援事業者及びその事業所の名称又は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名称</td> <td>届出年月日 届出年月日</td> </tr> <tr> <td></td> <td>介護保険施設等</td> <td>入所等年月日 平成 年 月 日 退所等年月日 平成 年 月 日 入所等年月日 平成 年 月 日 退所等年月日 平成 年 月 日</td> </tr> </tbody> </table>	給付制限	内 容	期 間			開始年月日 終了年月日 開始年月日 終了年月日 開始年月日 終了年月日		居宅介護支援事業者若しくは介護予防支援事業者及びその事業所の名称又は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名称	届出年月日 届出年月日		介護保険施設等	入所等年月日 平成 年 月 日 退所等年月日 平成 年 月 日 入所等年月日 平成 年 月 日 退所等年月日 平成 年 月 日
給付制限	内 容	期 間												
		開始年月日 終了年月日 開始年月日 終了年月日 開始年月日 終了年月日												
	居宅介護支援事業者若しくは介護予防支援事業者及びその事業所の名称又は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名称	届出年月日 届出年月日												
	介護保険施設等	入所等年月日 平成 年 月 日 退所等年月日 平成 年 月 日 入所等年月日 平成 年 月 日 退所等年月日 平成 年 月 日												

뒷면의 주의 사항도 잘 읽어 주십시오.

자신의 주소와 이름이 기재됩니다.

거택 서비스의 1개월에 이용할 수 있는 상한 (단위)이 기재됩니다.

서비스 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자 또는 지역포괄지원센터의 명칭이 기재됩니다.

< 개호보험 시설 등에 입소 (입주) 하고 있는 분의 특례에 대해 >

가와사키시의 피보험자가 다른 시정촌에 소재하는 개호보험 시설 등에 입소 (입주) 함에 따라 주소를 이동한 경우에는 시설 등 소재지의 시정촌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와사키시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주소지 특례).

개호보험피보험자증의 취급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올바르게 취급합니다.

- ❁ 피보험자증을 받으면 기재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해 주십시오.
- ❁ 요개호 · 요지원 인정신청 시나 서비스 이용 시에 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 주십시오.
- ❁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는 14 일 이내에 피보험자증을 첨부하여 신고해 주십시오.
- ❁ 복사한 것은 요개호 · 요지원 인정신청이나 서비스 이용 시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피보험자증은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 ❁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즉시 신고하고 피보험자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 ❁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재교부해 드림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개호보험피보험자증에 관한 신고 등은 거주지의 구청 보험연금과 · 지소 구민센터 보험연금 담당창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개호보험과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증의 차이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

요개호 · 요지원 인정신청 시에 제출합니다. 또한, 요개호 · 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이 케어 플랜에 입각한 서비스(자택이나 시설에서의 개호나 간호, 기능훈련 등)를 받을 때, 「개호보험부담비율증」과 함께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제시합니다.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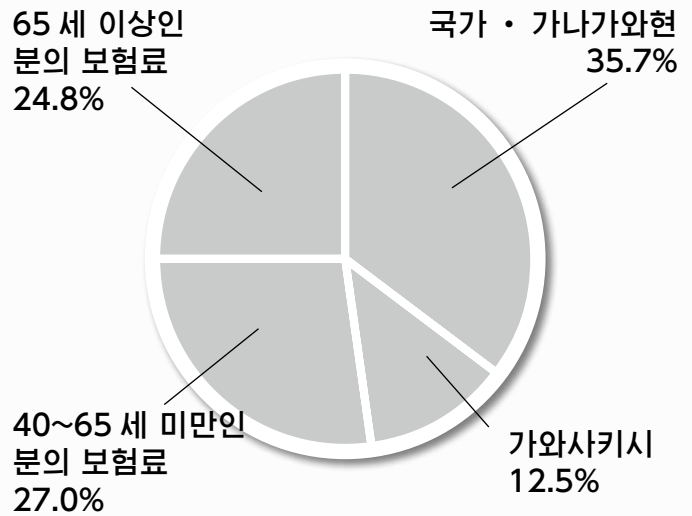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의료(진찰, 치료, 투약 등)를 받을 때 의료기관의 창구에 제출합니다.

개호보험료에 관하여

개호보험료는 원칙적으로 40 세 이상인 분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만, 65 세 이상인 분과 40 세 이상 65 세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납부 방법이 다릅니다.

또한, 개호보험의 급부비는 보험료와 공비로 조달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65 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는 급부비 전체의 약 4 분의 1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호보험급부비의 재원



65 세 이상인 분 (제 1 호 피보험자) 의 보험료

65 세 이상인 분의 개호보험료는 시정촌민세의 과세 상황 등에 따라 16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5~6 페이지 참조) .

개호보험료의 금액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3 년마다 개호보험 재정을 예측하여 시에서 결정합니다 .

✿ 개호보험료의 납부방법

원칙적으로 연금에서 공제 (특별징수) 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 하지만 65 세가 된 분이나 전입한 분은 곧바로 연금에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에서 공제가 개시되기까지 대략 8 개월 정도 걸립니다) . 그때까지는 납부서 또는 계좌이체 (보통징수) 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전입 전에 연금에서 공제되던 분도 공제가 일단 정지됩니다 .

❁ 개호보험료의 감면제도에 관하여

65세 이상인 분으로 재해·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개호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호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해 수입이 일정 정도 감소한 경우에도 개호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구청 보험연금과, 지소 구민센터 보험연금 담당창구에 상담해 주십시오.

❁ 개호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개호보험료를 체납하면 개호서비스 이용 시에 급부의 제한이 있습니다.

-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장을 송부합니다. 또한, 독촉장의 지정 기한이 지나버리면 지정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 ※ 개호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예저금 등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0세 ~64세인 분 (제 2호 피보험자) 의 보험료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보험료와 함께 납부합니다. 보험료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한 건강보험조합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당신의 보험료의 결정방법 65세 이상인 분

해당하는 분	보험료 단계	연간 보험료액	대략적인 월액
생활보호 또는 중구 잔류 일본인 등 지원급부를 받고 있는 분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이고, 노령복지연금을 받고 있는 분	제 1 단계	22,730 엔	1,894 엔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이고, 본인의 과세연금수입액과 합계 소득금액*의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분	제 2 단계	22,730 엔	1,894 엔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이고 제 1 단계 · 제 2 단계 이외이며, 본인의 과세연금수입액과 합계 소득금액*의 합계가 120 만엔 이하인 분	제 3 단계	30,310 엔	2,526 엔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이고, 제 1 단계 · 제 2 단계 · 제 3 단계 이외인 분	제 4 단계	53,040 엔	4,420 엔
본인은 시정촌민세 비과세이지만 같은 세대에 시정촌민세 과세자가 있는 분으로, 본인의 과세연금수입액과 합계 소득금액*의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분	제 5 단계	68,200 엔	5,683 엔
본인은 시정촌민세 비과세이지만, 같은 세대에 시정촌민세 과세자가 있는 분으로 제 5 단계 이외인 분	제 6 단계	75,780 엔	6,315 엔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합계 소득금액*이 125 만엔 미만인 분	제 7 단계	87,140 엔	7,262 엔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합계 소득금액*이 125 만엔 이상 200 만엔 미만인 분	제 8 단계	94,720 엔	7,893 엔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합계 소득금액*이 200 만엔 이상 300 만엔 미만인 분	제 9 단계	113,670 엔	9,473 엔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합계 소득금액*이 300 만엔 이상 350 만엔 미만인 분	제 10 단계	125,030 엔	10,419 엔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합계 소득금액*이 350 만엔 이상 500 만엔 미만인 분	제 11 단계	132,610 엔	11,051 엔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합계 소득금액*이 500 만엔 이상 700 만엔 미만인 분	제 12 단계	151,560 엔	12,630 엔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합계 소득금액*이 700 만엔 이상 1,000 만엔 미만인 분	제 13 단계	166,710 엔	13,893 엔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합계 소득금액*이 1,000 만엔 이상 1,500 만엔 미만인 분	제 14 단계	181,870 엔	15,156 엔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합계 소득금액*이 1,500 만엔 이상 2,000 만엔 미만인 분	제 15 단계	197,020 엔	16,418 엔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합계 소득금액*이 2,000 만엔 이상인 분	제 16 단계	212,180 엔	17,682 엔

당신의
개호보험료는
기준액의



※ 개호보험료를 판단할 때는 합계 소득금액(지방세법 제 292 조 제 1 항 제 13 호에서 「장기 양도 소득 및 단기 양도 소득 과 관련된 특별 공제액」, 또한 본인이 비과세인 경우에는 「공적 연금 등과 관련된 잡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제 1~6 단계인 분) ① 급여 소득과 공적 연금 등과 관련된 잡소득이 있고, 소득 금액 조절 공제의 적용이 있는 경우는 급여 소득 금액에 해당 공제액을 더한 후 10 만엔을 공제.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분으로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는 급여 소득 금액에서 10 만엔을 공제.
 (제 7 단계 이상인 분) 급여 소득 또는 공적 연금 등과 관련된 잡소득이 있는 경우는 급여 소득 금액과 공적 연금 등과 관련된 잡소득의 합계액에서 10 만엔을 공제.

개호보험이용 절차

- ※ 본인이나 가족이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에 신청을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조사 및 주치의 의견서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므로 이용자 본인의 부담은 없습니다.
- ※ 갱신에 대해: 인정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 만료 60 일 전부터 갱신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개호보험금부는 받을 수 없으므로 피보험자증을 확인해 주십시오.
- ※ 구분 변경에 대해: 인정 유효 기간 내에 있더라도 심신의 상태가 변화한 경우에는 인정 구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 요개호·요지원 인정이

요개호·요지원 인정신청※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거주지의 구청 고령·장애과, 지구 건강복지 스테이션 개호인정금부 담당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요개호·요지원 인정※

인정조사·주치의 의견서



심신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인정조사원이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확인도 함께 실시합니다).

인정조사 결과

주치의의 의견서

시에서 주치의에게 의견서의 작성을 의뢰합니다.

개호인정심사회



의사나 보건·복지 전문가가 인정조사 결과와 주치의 의견서에 입각하여 어느 정도의 개호·지원이 필요한지 심사·판정을 합니다.

인정 결과

요개호 5

요개호 4

요개호 3

요개호 2

요개호 1

요지원 2

요지원 1

비해당

요개호 1~5 로 인정된 분

개호보험의 개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택개호지원사업자 등에서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요지원 1·2 로 인정된 분

개호보험의 개호예방서비스 및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 사업 (16 페이지)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에서 개호예방 케어 플랜 작성 및 개호예방 케어 매니지먼트를 실시합니다.

기본 체크 리스트 실시를 통한 대상자 판정

25 개 항목으로 구성된 생활 상황 등에 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체력 및 기력 등 생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생활 기능을 체크합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실시합니다.)
※본인이 사업 대상자 판정 수속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정 신청을 하지 않고 기본 체크 리스트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개호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 대상자 (사업 대상자)

자립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분 (비해당)

일반 개호예방사업 (16 페이지)

사업 대상자로 판정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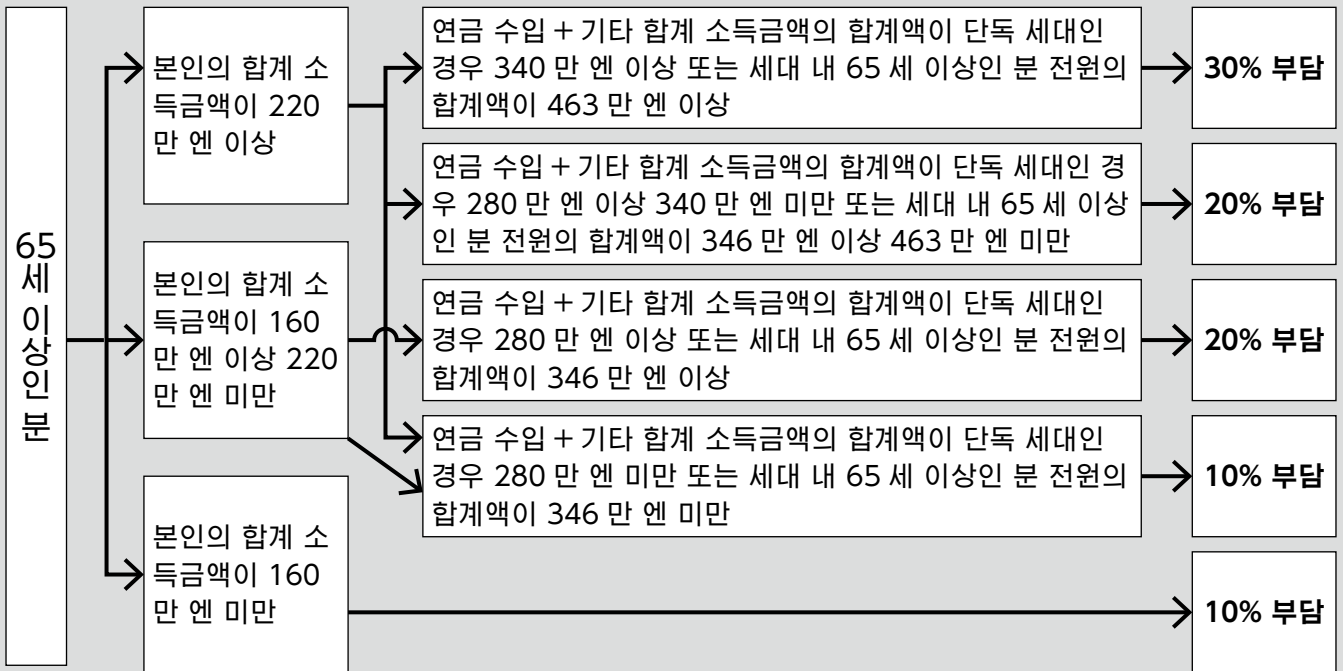
개호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 (16 페이지)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에서 개호예방 케어 매니지먼트를 실시합니다.

개호보험서비스의 비용

-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용의 일부는 자기부담이 됩니다.
자기부담은 이용한 개호보험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현역 수준의 소득이 있는 분은 30%,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20%, 그 이외의 분은 10%가 됩니다.
※ 보험금부 대상 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개호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에게는 이용자 부담 비율(10%~30%)이 기재된 개호보험부담비율증을 발행합니다.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호보험피보험자증**과 **개호보험부담비율증**의 2개가 필요합니다.
- 개호보험부담비율증의 유효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요개호 인정 등을 받고 있는 분에게는 7월 중순 이후에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유효한 개호보험부담비율증을 보내 드립니다.

이용자 부담 판정의 흐름



※ 제 2호 피보험자(4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 시구정촌민세 비과세인 분, 생활보호 수급자는 상기에 관계없이 10% 부담
 ※ 「합계 소득금액」이란 수입에서 공적 연금 등 공제 및 급여 소득 공제,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에 기초 공제 및 인적 공제 등의 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장기 양도 소득 및 단기 양도 소득과 관련된 특별 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개호보험서비스의 지급 한도액

개호보험의 재택 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요개호도에 따라 1개월당 지급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급한도액을 초과하여 개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기부담이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시설 서비스 등은 독자적인 지급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요개호도	1개월당 지급한도액	요개호도	1개월당 지급한도액
사업 대상자	5,032 단위 (약 6 만엔)	요개호 2	19,705 단위 (약 21 만엔)
요지원 1		요개호 3	27,048 단위 (약 29 만엔)
요지원 2	10,531 단위 (약 12 만엔)	요개호 4	30,938 단위 (약 33 만엔)
요개호 1	16,765 단위 (약 18 만엔)	요개호 5	36,217 단위 (약 39 만엔)

요지원 1·2, 요개호 1~5 로 인정된 분

개호보험 서비스는 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과 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릅니다.

재택 서비스

방문개호 (홈헬프서비스)

요개호 1~5

홈헬퍼가 방문하여 신체의 개호나 가사의 원조를 실시합니다.
※요지원 1·2는 개호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을 이용합니다.

방문입욕개호

요지원 1·2

요개호 1~5

욕조를 실은 입욕 차량으로 방문하여 입욕개호를 실시합니다.

방문간호

요지원 1·2

요개호 1~5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영양상의 간호 등을 실시합니다.

방문재활치료

요지원 1·2

요개호 1~5

이학요법사 (물리치료사) 등이 방문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합니다.

거택요양관리지도

요지원 1·2

요개호 1~5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등이 방문하여 영양상의 관리·지도 등을 합니다.

통소개호 (데이서비스)

요개호 1~5

데이서비스센터에서 생활 기능 유지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입욕·식사 등의 지원 및 기능 훈련을 실시합니다.
※요지원 1·2는 개호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을 이용합니다.

통소재활치료 (데이케어)

요지원 1·2

요개호 1~5

개호노인보건시설 등에서 이학요법사 (물리치료사) 등이 재활치료를 실시합니다.

단기입소생활개호 (숏 스테이)

요지원 1·2

요개호 1~5

특별양호노인홈 등의 시설에 단기간 입소하여 일상생활상의 개호나 기능훈련을 받습니다.

단기입소요양개호 (숏 스테이)

요지원 1·2

요개호 1~5

개호노인보건시설 등의 시설에 단기간 입소하여 의학적인 관리하에 개호나 기능훈련 등을 받습니다.



지역밀착형 서비스

익숙한 지역에서 가능한 한 자립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와사키시의 피보험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순회 · 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요개호 1~5

주간·야간을 통해 정기 순회 및 필요에 따라 수시방문을 실시합니다. 개호와 간호가 연계를 도모하면서 헬퍼에 의한 입욕, 배설 개호 및 간호 직원에 의한 영양상의 돌봄 및 진료 보조 등을 실시합니다.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요개호 1~5

야간 정기순회 및 긴급 시 등 통보시스템에 의한 방문개호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지역밀착형 통소개호

요개호 1~5

이용 정원 18명 이하인 데이서비스센터에서 생활 기능 유지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입욕·식사 등의 지원 및 기능 훈련을 실시합니다.

인지증 대응형 통소개호

요지원 1·2

요개호 1~5

데이서비스센터에서 비교적 안정된 인지증인 분에 대해 생활 기능 유지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입욕·식사 등의 지원 및 기능 훈련을 실시합니다.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요지원 1·2

요개호 1~5

통소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상태 및 희망에 따라 방문 및 숙박을 조합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요개호 1~5

의료 요구가 높은 이용자가 방문 간호와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를 조합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한 유연한 대응을 실시합니다.

인지증 대응형 공동생활개호

요지원 2

요개호 1~5

비교적 안정된 인지증인 분이 소수 인원으로 공동 생활을 보내면서 입욕·식사 등의 개호 및 기능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주) 요지원 1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요개호 3~5

정원 29명 이하인 소규모 개호노인복지시설에서 일상 생활에서 항상 개호가 필요한 분에게 입욕·식사 등의 개호 및 일상 생활상의 돌봄, 기능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신규 입주는 원칙적으로 요개호 3 이상입니다.



복지용구 · 주택 개수 서비스

일상 생활의 자립을 돕습니다.

복지용구 대여

요지원 1·2

요개호 1~5

- ① 휠체어
- ② 휠체어 부속품 (전동 보조 장치 등)
- ③ 특수 침대 (개호용 베드)
- ④ 특수 침대 부속품 (사이드 레일 등)
- ⑤ 욕창 방지 용구
- ⑥ 체위 변환기
- ⑦ 인지증 노인 배회 감지 기기
- ⑧ 이동용 리프트 (매달기 금구 제외)
- ⑨ 난간 (공사를 동반하지 않는 것)
- ⑩ 슬로프 (공사를 동반하지 않는 것)
- ⑪ 보행기
- ⑫ 보행 보조 지팡이
- ⑬ 자동 배설 처리 장치 (교환 가능 부품 제외)

① ~ ⑧의 복지용구는 원칙적으로 요지원 1·2, 요개호 1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⑬의 복지용구는 원칙적으로 요지원 1·2, 요개호 1~3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 부담에 대해
대여 비용의 10%~30%입니다.
지급 한도액 (9 페이지 참조)이 적용됩니다.
복지용구 종류 및 사업자에 따라 금액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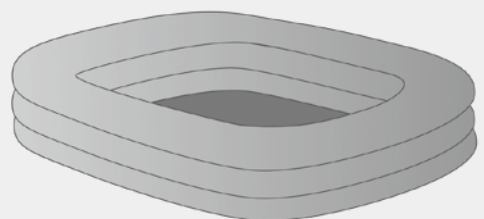
특정 복지용구 구입비 지급

요지원 1·2

요개호 1~5

- ① 수세식 변기
- ② 자동 배설 처리 장치의 교환 가능 부품
- ③ 입욕 보조 용구
- ④ 간이 욕조
- ⑤ 이동용 리프트의 매달기 금구 부분

- 이용자 부담에 대해
복지용구 구입비의 70%~90%를 지급합니다.
지급 한도액은 매년도 10만 엔입니다.
수령위임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 부터 구입한 경우에 한해 지급 대상이 됩니다.



④

주택 개수비 지급 (주) 개수 전에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① 난간 설치
- ② 단차 해소
- ③ 미끄럼 방지 및 이동의 원활화를 위한 바닥 또는
통로면의 재료 변경
- ④ 미닫이 등으로 문 교체
- ⑤ 양식 변기 등으로 변기 교체
- ⑥ 상기 ① ~ ⑤의 공사에 부대적으로 필요한 주택
개수

- 이용자 부담에 대해
주택 개수비의 70%~90% 를 지급합니다.
지급 한도액은 20 만 엔입니다.
수령위임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령위임지불제도란

개호보험을 통한 복지용구 구입비 및 주택 개수비 지급은 일단 비용의 전액을 지불하고, 추후에 신청을 통해 보험 급부분 (70% 에서 90%) 을 환급 받는 상환 지불입니다. 단, 수령위임지불제도를 이용하면 처음부터 10%~30%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교통 사고 등 (제삼자 행위) 에 따른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통 사고 등의 제삼자 행위가 원인으로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험급부를 받는 경우는 거주지의 구청 고령·장애과, 지구 건강복지 스테이션 개호인정급부 담당창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 특수 사기에 주의를 ! >

시내에서 특수 사기 (입금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화로 「현금 카드」 관련 내용을 들었다면 사기입니다.
- 자택 전화는 「자동 응답 전화」 로 설정하여 의심스러운 전화는 직접 받지 않도록 합니다.



시설 서비스

시설 서비스는 어떤 개호가 필요한가에 따라 4 개의 타입으로 나뉩니다.
입소할 시설을 선택한 후 직접 신청하여 계약을 맺습니다.
시설 서비스비 외에 식비, 거주비, 이미용비, 일용품비 등이 듭니다.

개호노인복지시설 (특별양호노인홈)

요개호 3~5

일상 생활에서 항상 개호가 필요한 분이 대상인 시설입니다. 입욕, 식사 등의 개호 및 일상 생활 상의 돌봄, 기능 훈련,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개호 1 · 2 는 거택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데 대해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호노인보건시설

요개호 1~5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안정되어 재택 복귀를 위한 재활 치료에 중점을 둔 분이 대상인 시설입니다. 간호, 의학적 관리 아래 개호, 기능 훈련 및 그 밖의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요양 병상)

요개호 1~5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증상은 안정되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요양이 필요한 분이 대상인 시설입니다. 요양 상의 관리, 간호, 의학적 관리 아래 개호, 기능 훈련 및 그 밖의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 의료원

요개호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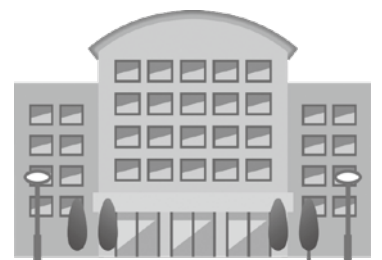
장기간에 걸친 요양이 필요한 분이 대상인 시설입니다. 요양상의 관리, 간호, 의학적 관리 아래 개호, 기능 훈련 및 그 밖의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 개호 및 터미널 케어에도 대응합니다.

특정시설입주자 생활개호 (개호형 유료 노인홈, 케어 하우스, 양호노인홈 등)

기타, 개호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요지원 1 · 2 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 및 비용 등은 시설에 따라 다르므로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양호노인홈은 조치를 통한 입소이므로 거주지의 구청 고령·장애과,
지구 건강복지 스테이션 고령자 지원 담당 창구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서비스 이용 시의 이용료 경감

고액개호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에 관하여

1 개월 이용자 부담이 일정한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신청을 통해 「고액 개호 (개호예방) 서비스비」가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신청을 알려 드리는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개호예방) 복지용구 구입비 · (개호예방) 주택 개수비의 본인 부담액은 대상이 아닙니다.

고액의료합산개호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에 관하여

1 년간의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이용자 부담 합계액이 일정한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신청을 통해 「고액의료합산개호 (개호예방) 서비스비」가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신청을 알려 드리는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지급 신청은 매년 7 월 31 일 시점에서 가입한 의료보험자가 청구 역할을 합니다.

특정입소자개호 서비스비의 지급에 관하여

소득 및 자산이 일정 이하인 분이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소득 등에 따라 부담 한도액이 설정되고, 거주비 · 식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가 경감됩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이용료의 부담경감제도에 관하여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액 이하인 분이 사회복지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에 의해 서비스 이용료 · 주거비 · 식비가 경감됩니다.

인지증 대응형 공동생활개호에 따른 이용자 부담 경감제도에 관하여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이하인 분이 인지증 대응형 공동생활개호 (그룹 홈) 을 이용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집세, 식비, 광열수비가 경감됩니다.

그 밖의 이용료의 부담경감제도에 관하여

-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액 이하인 분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에 의해 서비스 이용료 · 주거비 · 식비를 경감해주는 가와사키시의 독자적인 제도도 있습니다.
- 상기 이외에도 서비스 이용료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거주지의 구청 고령 · 장애과, 지구 건강복지 스테이션 개호인정금부 담당창구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요지원 1 · 2 인 분 · 비해당인 분을 위한 서비스

●개호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 (이하 「서비스 사업」 이라 합니다)

대상자

- 요지원 1 · 2 판정을 받은 분
- 65 세 이상으로 「사업 대상자」 판정을 받은 분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기본 체크 리스트를 통해 개호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분입니다.
※ 40 세 ~64 세 (제 2 호 피보험자) 는 사업 대상자의 대상이 아니므로 「요지원 1 · 2」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 개호보험제도 이용자 부담 비율에 따릅니다.

개호예방 방문 서비스

개호 사업소의 홈헬퍼 및 「가와사키 생활 서포터」 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와 협동하여 가사 보조 등을 실시합니다.

개호예방 통소 서비스

데이스비스센터에서 입욕·식사, 생활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체조 및 근력 트레이닝 등을 실시합니다.

개호예방 단시간 통소 서비스

데이스비스센터에서 입욕·식사, 생활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체조 및 근력 트레이닝 등을 단시간 내에 실시합니다.

●일반 개호예방 사업

65 세 이상인 분, 해당 지원을 위한 활동과 관련된 분이 대상입니다.
지역 속의 개호예방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개호예방 보급 계발 사업

개호예방에 관한 팸플릿 배포 및 건강 강좌·강연회 등의 개최 등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개호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립니다.

(2) 지역 개호예방 활동 지원 사업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개호예방 활동 지원 및 개호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 봉사자 육성 등을 실시합니다.

●휴식 원기 광장 사업

가와사키시 내에 거주하는 65 세 이상인 분으로 가와사키시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시내의 모든 「휴식의 집」 에서 매주 1 회, 전문 지도원이 넘어지지 않는 몸 만들기 위한 체조나 개호예방·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미니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가 기간은 6 개월입니다.

※ 의사가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분이나 요개호 1~5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란 ?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자립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건사, 주임 케어매니저, 사회 복지사 등의 직원이 개호·복지·건강·의료 등의 다양한 상담에 응해주는 「고령자 여러분의 가까운 상담창구」입니다 (거주 지역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업무내용

종합상담 · 지원권리 옹호사업

개호보험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상담 업무와 학대방지 등 권리옹호에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개호예방 케어 매니지 먼트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케어 플랜 등을 작성하여 필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 후의 상황 확인도 실시합니다.

포괄적 · 계속적 매니 지먼트 지원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케어 매니지먼트의 후방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

구	명칭	전화번호	FAX 번호
가와사키구	시온	222-7792	222-7796
	코순엔	211-6313	223-1240
	오오시마나카지마	201-8831	201-8834
	쿄마치	333-7920	333-7938
	비올라 가와사키	329-1680	322-2553
	오쥬엔	287-2558	287-2577
	다이시쥬오	270-5112	287-5562
	후지사키	270-3215	270-5682
	다이시노사토	266-9130	266-9131
사이와이구	코후엔	556-4355	511-3511
	유메미가사키	580-4765	742-8040
	카시마다	540-3222	540-3220
	상그릴라	520-3863	520-3861
	민나토쿠라스마치	520-1905	520-1906
	사이와이히가시	555-1411	555-1412
나카하라구	스미요시	455-0980	455-0883
	코다나카	798-2332	755-5656
	히라마노사토	544-4012	544-3961
	미야우치	740-2814	740-2816
	이다	751-6661	751-6385
	토도로키	281-3666	281-3616

구	명칭	전화번호	FAX 번호
타카츠크구	와라쿠	799-7951	799-7952
	스에나가	861-5320	861-6194
	히다마리노소노	814-5637	814-5636
	미조노쿠치	820-1133	822-0500
	히사스에	797-6531	797-6540
	키노오카	820-8401	820-8402
	리 케어 무카이가오카	865-6238	865-6239
미야마에구	미카도소	777-5716	777-1193
	와시가미네	978-2724	976-6470
	후지미 플라자	740-2883	777-3239
	리스트어 가와사키	976-9590	976-9591
	프렌드 시보쿠	871-1180	877-2800
	미야마에다이라	872-7144	852-3377
	비올라 미야자키	948-5371	948-5372
타마구	나가사와소쥬노사토	935-0086	935-0093
	타마가와노사토	935-5531	935-3511
	타이요노소노	959-1234	959-1233
	스게노사토	946-5514	946-3432
	슈쿠가와라	930-5151	930-5911
	요미우리랜드 하나하우스	969-3116	969-3160
	노보리토	933-7055	933-7077
아사히구	카키오 아루나엔	989-5403	988-9774
	쿠리기다이	987-6505	380-7970
	니지노사토	986-4088	986-1027
	카타히라	986-4986	986-4987
	유리가오카	959-6522	953-8485
	신유리	969-3388	969-0200
	타카이시	959-6020	959-6021

※ 각 지역포괄지원센터의 담당 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구청 고령·장애과, 지구 건강복지 스테이션 개호보험 담당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내용과 거주지	개호보험료에 관하여 (개호보험료)	개호인정에 관하여 (개호인정)	개호서비스에 관하여 (개호급부)	개호보험 이외의 서비스에 관하여 (고령자 지원)	FAX 번호	개호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와사키구	가와사키시 보험 콜 센터 200-0783	201-3282	201-3282	201-3080	201-3291	가와사키시 종합 사업 전용 내비 다이얼 0570-040-114	
다이시 지구		271-0152	271-0161	271-0157	271-0128		
타지마 지구		322-1990	322-1996	322-1986	322-1995		
사이와이구		556-6655	556-6689	556-6619	555-3192		
나카하라구		접수 시간 평일	744-3179	744-3136	744-3217		744-3345
타카츠크구		8:30~17:15 둘째·넷째 토요	861-3263	861-3269	861-3255		861-3249
미야마에구		일 8:30~12:30	856-3245	856-3238	856-3242		856-3163
타마구			935-3185	935-3187	935-3266		935-3396
아사오구			965-5198	965-5146	965-5148		965-5206

건강복지국 장수사회부	보험료에 대해	인정에 대해	급부에 대해
개호보험과	200-2691	200-2455	200-2687

건강복지국	지역포괄지원센터에 대해	인지증·권리 옹호에 대해
지역포괄케어추진실	200-2681	200-2470

건강복지국 보건소	휴식 원기 광장에 대해
건강증진과	0570-040-114

* 안녕하세요 개호보험입니다 (영어·중국어·한국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타갈로그어)
「가와사키시 홈페이지」 <http://www.city.kawasaki.jp/350/page/0000049639.html>



* 개호보험의 사업자 정보는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호서비스 정보 공표」 <http://www.kaigokensaku.mhlw.go.jp/>



* 가와사키시의 생활 지원 등 서비스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와사키시 생활 지원 등 서비스 정보 공표」
<http://kana.rakuraku.or.jp/rsrc/141305/index/tag/>



2021년 7월 발행